

<2016년대비 FTA특례법 개정사항>

1. 시행령 개정사항

P100

제6장 원산지증빙서류

2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1. 수출물품 원산지오류 수정통보

(2) 수정통보방법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수출자·생산자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
- ②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자
-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 ④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 ⑤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 개정전 - 수정통보서에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 첨부

P102

제6장 원산지증빙서류

3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법 제12조)

2.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간 및 보관대상 증빙서류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입자: 법 제10조제1항(수리전신청) 또는 3항(수리후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 2. 수출자: 수출신고수리일부부터 5년
- 3.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 개정전 - 1. 수입자 : 수입신고수리전부터 5년

P116

제7장 원산지조사 및 원산지 사전심사

1 원산지에 관한 조사 (법 제13조)

4.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1) 조사원칙

① 의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

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예외규정 - 신설

상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P126

제7장 원산지조사 및 원산지 사전심사

2 원산지 사전심사 (법 제14조)

2. 신청방법

(4) 보 정

관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전 - 일정한 기간

2. 시행규칙 개정사항

P10

제2장 FTA특례법의 총칙

2 FTA특례법의 용어 (법 제2조)

8. 기타 용어의 정의

(4) 원산지포괄증명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전 -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P88 - 89

제6장 원산지증빙서류

1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 (법 제9조의2)

8.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6) 보정요구

증명서발급기관은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5)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전 - 일정한

(7)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할 수 있다.

(8) 신청서류

상기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P91

제6장 원산지증빙서류

1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 (법 제9조의2)

10. 원산지의 확인서와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1) 원산지의 확인서

③ 서식

상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예외

③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상기의 일정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는 때에는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인증요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 ㉠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원산지조사)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 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 개정전 -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④ 보정요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②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③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전 - 일정한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⑧ 인증유효기간을 연장

⑦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기 ③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기 ①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전 - 3년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 \(원산지조사\)](#)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2년간 서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P96

12.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1) 자율발급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작성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발급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개정전 - 수출자

3.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의 협정에 의한 개정사항

P8

(11)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토켈라우는 제외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12) 베트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13) 중국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P15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적용하는 물품 및 세율

영 별표 6의9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적용할 물품 및 세율

영 별표 6의10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적용할 물품 및 세율

영 별표 6의11

P35

*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

(1)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통보

법 제5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체 없이 뉴질랜드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 시작 즉시 협의기회 제공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즉시 뉴질랜드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조사 시작 후 약속의 제의 내용 통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약속의 이용가능성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물품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상계관세의 특례

① 준용

법 제5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뉴질랜드"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2항"으로 본다.

② 조사시작 후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한 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뉴질랜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약속의 제의 이용가능성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뉴질랜드와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

(1)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통보

법 제5조의2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베트남에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사 시작시 약속의 제의 등 정보제공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상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베트남 대사관 또는 베트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약속의 이용가능성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자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물품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한내 조사불가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베트남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

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적적 평가시 신중검토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상계관세의 특례

① 준용

법 제5조의2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베트남"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2항"으로 본다.

② 조사시작 후 통보

기획재정부장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한 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베트남 대사관 또는 베트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약속의 제의 이용가능성 통보

기획재정부장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베트남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 신중검토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

(1)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통보

법 제5조의2 및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중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통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상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출자에게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물품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결과 공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현지 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기한내 조사시 신중검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⑥ 누적적 평가시 신중검토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중국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상계관세의 특례

① 준용

[법 제5조의2](#) 및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중국"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2항"으로 본다.

② 조사시작 후 정보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한 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중국 대사관 또는 중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약속의 제의 이용가능성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의 결과 공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현지 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 신중검토

무역위원회는 중국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 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P36

3. 긴급관세

(1) 의의 및 부과요건(법 제6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 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무역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영 8조의21)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체약상대국이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 터키,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 외의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P40

(7) 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법 제7조의 2)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인도, 페루,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을 「관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P58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잠정긴급관세조치특례의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관정을 하기 전에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료 및 의견을 제출 기회제공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관정을 하기 전에 상기에 따른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P59

♣ 뉴질랜드

1)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긴급관세조치의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뉴질랜드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통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도기간 중 긴급관세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①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뉴질랜드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도기간이 지난 때 긴급관세조치 종료

④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③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동일물품 긴급관세 불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동시적용금지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①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나 [제6조](#)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⑧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5조제1항에 따라 뉴질랜드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베트남

1)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긴급관세조치의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베트남과의 협정 부속서 2-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통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7.1조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베트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도기간 중 긴급관세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2조에 따른 과도기간(베트남과의 협정 발효일부터 10년 간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철폐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도기간이 지난 때 긴급관세조치 종료

④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③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동일물품 긴급관세 불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①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동시적용금지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⑧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잠정긴급관세조치특례의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신청서 공개분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관정을 하기 전에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료 및 의견을 제출 기회제공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관정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 중국

1)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긴급관세조치의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통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①의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도기간 중 긴급관세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기간(중국과의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 간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철폐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도기간이 지난 때 긴급관세조치 종료

④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동일물품 긴급관세 불가

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조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동시적용금지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①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⑧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국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구 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조치기간	2년(200일)	2년(200일)	2년(200일)
총 기간	3년	3년	4년
과도기간	5년	10년	10년

* 조치기간 특이 - 아세안(3년), EFTA(1년)

* 잠정기간 특이 - 칠레(120일), 페루(180일)

* 과도기간 특이 - 아세안(7년), 호주(5년), 뉴질랜드(5년)

P64

♣ 뉴질랜드

*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 관세조치의 특례

① 세율

법 제7조의3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 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7과 같다.

② 준용

상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7"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뉴질랜드"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록 2-가-1"로 본다.

(3)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법 제7조의4)

① 의의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미합중국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물품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7조의4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미국및중국과의협정에따른 「관세법」 제68조의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① 법 제7조의4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별표 3의3에 규정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조의4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3의5와 같다.

③ ②에 따른 별표 3의5에서 규정한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P65

☞ 수입신고의 수리일(受理日)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 대상

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 페루, 미합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및 베트남협정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의 물품에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1.부터 4.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 견품
5.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로서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3) 담보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3.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1)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2.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1)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1.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 3.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과세가격\$250)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3.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P74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6](#)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7](#)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8](#)

P78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1) 아세한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2)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로부터 2년

(3) 페루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4년

(5) 콜롬비아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6) 호주와의 협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 기관발급의 경우: 발급일

* 자율발급의 경우: 서명일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한다.

P83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① 원칙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① 원칙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구 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발급방식	자율	기관 (산업무역부)	기관 (중국국가질량감독검 험검역총국, 중국국제 무역촉진위원회)
대한민국	자율	자유무역관리원제외 (개성-세관)	자유무역관리원제외 (개성-세관)
자율발급 발급주체	수출자 생산자		

P89

(10)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재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P99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제4조의10](#)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3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5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7서식](#)과 같다.

P116

(2) 계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 등

① 조사결과통지

관세청장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터키: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P120

* 시행규칙 24조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10.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회신 기간

구 분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관세청장의 원산지조사결과통지	관세청장의 요청에 따른 체약상대국의원산지조사결과통지
	관세청장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수출물품)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 관세청장 (수입물품)
유럽자유무역 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아세안회원국	조사요청을 접수한날부터 2개월 (6월의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좌동)
인도	조사요청을 접수한날부터 3개월 (6월의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조 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좌 동)
유럽연합당사 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페루	조사요청을 접수한날부터 150일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 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미합중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섬 유)
터키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호주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호주의증명서 발급기관에원산지의확인을요청한날 부터30일 (30일범위내 연장가능)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부터 6개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 터 6개월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조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P124

⑬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⑭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⑮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국의 관세당국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구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조사방법	직접	간접	간접
예외규정		(현지조사)	(현지조사)

P145

4 통관절차의 특례 (법 제20조의2)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통관 절차의 특례

[법 제20조의2](#) 및 해당 계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200)
2.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100)

*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

[법 제20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00)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